

강사료지급규정

제정 : 2011.03.01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의 강사료 지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1. 22.>

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“특수강의” 라 함은 실험·실습,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지도와 시범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2. “보통강의” 라 함은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3. “특별강의” 라 함은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4. “초과강의” 라 함은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5. “시간강의” 라 함은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제3조(강사료의 지급) ①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각각 강사료를 지급한다.

1. 전임교원 및 겸임·초빙교원의 초과강사료 :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2. 시간강사료 :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 강의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3. 강의시간 : 매학기 15주를 기준으로 주 단위로 계산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개교기념일, 국경일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경우에는 보강에 한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.

제4조(강사료 지급) ① 강사료는 4주 단위로 강의시간을 계산하여 매 5주차에 지급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기준액은 매학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5조(비정규교육과정에 의한 강사료 지급 등) 공개강좌 등 비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강사료는 당해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기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. 교원책임강의시수> <삭제:2014.11.01>